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080

2024. 9. 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4. 9.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실장 이해우)

1. 제안이유

-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은 금융혁신을 이끄는 핀테크 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여의도 서울핀테크랩과 연계하여 글로벌 유니콘 배출을 목표로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디지털금융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제2서울핀테크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효과적인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나. 위탁기간 : 2년('25.1.~'26.12.)

다. 소요예산 : 980,648천원('24년 기준)

라.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내용

- (입주기업 관리) 입주기업 모집·선정 및 평가, 공간 배정 및 관리, 사용료 징수 등
- (경영안정화 지원) 진단컨설팅, 기술·법률 등 멘토링, 교육 운영
- (시장 진출 지원) BM고도화, 마케팅 지원, 인재채용 등 기획·운영
- (투자유치 지원) IR Deck 제작, IR 밋업 및 데모데이 개최 등
- (규제개선 지원) 혁신기술을 위한 규제 개선 간담회, 컨설팅 등 운영
-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글로벌 진출 컨설팅 등
- (협력사업 추진) 국내·외 핀테크·금융사, VC, 유관기관 협업 추진
- (성과조사) 입주 및 졸업기업 성과조사, 우수 사례 발굴 등
- (시설관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조치 등

바.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18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핀테크’ 라는 특화된 산업분야에 대한 육성과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인큐베이팅 시설 운영을 위해 고도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민간의 전문적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감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18조>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나. 예산조치 : 2024년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III. 검토의견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제2서울핀테크랩 민간위탁 기간의 종료(2024.12.31.)가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 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¹⁾ 제출됨.

2. 제2서울핀테크랩 조성 및 운영 현황

- 서울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핀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과 핀테크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성장기 핀테크기업 지원 중심의 제1서울핀테크랩과 초기창업 핀테크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제2서울핀테크랩(이하 “제2핀테크랩”)을 운영 중에 있음.

< 제1서울핀테크랩 및 제2서울핀테크랩 기능 >

제1서울핀테크랩	제2서울핀테크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소 : 2018년 4월○ 소재 : 영등포구 여의도○ 기업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기 핀테크기업의 스케일업- 유니콘 기업 배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소 : 2023년 1월○ 소재 : 마포구○ 기업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창업 핀테크기업의 발굴 및 육성- 성장지원

- 이 중 제2서울핀테크랩은 초기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최초 6개월간(2022.11.~2023.4.) 용역방식으로 시범운영 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2023.5.1.)함.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탁기관은 입주기업(42개사)을 대상으로 매출액 및 투자유치액 증가와 지적재산권 등록, 신규고용 등의 지표를 관리하며, 이를 위해 ▶기업역량강화, ▶BM²⁾고도화 ▶투자유치 지원 등 9개의 주요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현황 >

- 위치: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림빌딩 8층, 11층
- 규모: 총 2,014㎡(8층 1,007㎡, 11층 1,007㎡)
- 입주현황: 입주 41개사(2024.5월 기준)
- 위탁기관: 씨엔티테크(23.5.1.~24.12.31.)
- ※시범운영: 2022년 11월 ~ 2023년 4월(용역사: 오픈놀)

계약기간	수탁기관	협약 방식
2022.11.~2023.04.	(주)오픈놀	용역
2023.05.~2024.12.	(주)씨엔티테크	민간위탁

- 주요사무
 - ▶(경영안정화 지원) 진단컨설팅, 기술·법률 등 멘토링, 교육 운영
 - ▶(시장 진출 지원) BM고도화, 마케팅 지원, 인재채용 등 기획·운영
 - ▶(투자유치 지원) IR Deck 제작, IR 밋업 및 데모데이 개최 등
 - ▶(규제개선 지원) 혁신기술을 위한 규제 개선 간담회, 컨설팅 등 운영
 -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글로벌 진출 컨설팅 등
 - ▶(협력사업 추진) 국내·외 핀테크·금융사, VC, 유관기관 협업 추진
 - ▶(성과조사) 입주 및 졸업기업 성과조사, 우수 사례 발굴 등
 - ▶(시설관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조치 등
- 공간구성: 입주기업 공간 13개(8층)·12개(11층), 회의실, 라운지, 운영사무실 등
- 사업비

구분	2023(5.1.~12.31.)	2024(1.1.~12.31.)
민간위탁금	7억 7천 8백만원	9억 8천 1백만원

- 2023년도는 주요 6개 사무에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전년대비 입주기업 매출 28% 증가, 투자유치 40억원, 지적재산권 등록 64건, 신규고용 96명 등의 기업성과를 내었음.

2) Business Model(BM) : 수익구조

< 2023년 기업성과 및 사업성과 >

매출	전년대비 28%상승	투자유치	40억원
지적재산권	64건	신규고용	96명
경영안정화 지원	마케팅·투자유치		핀테크·블록체인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멘토링 31회 • 정기멘토링 116회 • 특화멘토링 52회 • 자금테크트리 컨설팅 16개사 • 역량강화교육 1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전략보고서 10개사 • IR 클리닉 12개 • Closed IR 2회 • 데모데이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체인 창업 아카데미 1회 • 블록체인 분야 세미나 1회 • 채용연계 밋업데이 1회
글로벌 진출 지원	국내 핀테크 행사 참가		규제샌드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IR 클리닉 5개사 • 글로벌 전략멘토링 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핀테크워크2023 1회 • 서울핀테크워크2023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샌드박스 특강 5회 • 규제샌드박스 네트워킹 1회

3. 민간위탁 재위탁의 타당성 검토

-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접목된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비롯하여 디지털은행까지 광범위한 확장성을 갖춘 신산업 분야임.
- 이러한 분야에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³⁾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종합성과평가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도 가능하나 서울시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1년여의 짧은 운영 기간을 토대로 현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심의가 이뤄질 경우 적정성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동의를 구하였음을 밝히고 있음.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민간위탁 요건

① 시 소관사무 ② 공공·공익성 ③ 능률성·전문성 / 지속성·포괄성 ④ 경쟁가능성 ⑤ 책임성

- 한편 서울시는 1년여의 짧은 운영 기간을 평가하면서 평가 기간 이후에 발생한 수탁기관 감점 요인 등이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됨.
- 예를 들어, 제2서울핀테크랩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 수탁기관은 ▶사업인프라 12.02점, ▶사업활동 6.6점, ▶사업성과 42.27점, ▶지도점검 이행노력 4.86점, ▶만족도 제고노력 16.19점 등 총점 100점 중 81.94점을 획득하여 재계약 배제 점수(75점)를 상회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가 실시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기관 지도점검에서 현 수탁기관이 타 사업에 중복참여하는 부정을 적발(2024.05.10.)하여 개선요구 및 비용 환수 조치를 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조치 사항은 종합성과평가 감점 요인에 해당하나, 종합성과평가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⁴⁾되어야 함에 따라 약 1년간 (2023.5말~2024.4월말)의 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되면서 부정 적발 사항은 감점 요인으로 적용되지 않은 등 평가에 한계가 발생함.

<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 적발 및 조치사항 >

○ 적발사항

- 수탁기관 인원 8명 중 5명이 서울시 핀테크랩 운영 외 타사업에 중복 참여
 - ▶ 상시 전담인력 6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협약 사항 및 타사업과 중복하여 인건비 지급 불가 등 위반 사항 적발(2024.5.10.)

< 타사업 중복참여 적발 현황 >

순번	구분	본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건수	중복참여기간
1	센터장	100%	30%~94%	8건	10개월
2	팀장	100%	20%~69%	3건	9개월
3	매니저	100%	100%	1건	10개월
4	매니저	50%	100%	3건	12개월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매니저	50%	100%	2건	8개월
6	매니저	100%	-	-	-
7	매니저	100%	-	-	-
8	매니저	100%	-	-	-

◦ 조치사항 : ▶ 중복사업의 정리, ▶ 참여인력 재구성, ▶ 중복지급 된 인건비 반납

- 다만 서울시가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과 관련하여 재위탁을 추진하면서 재위탁 기간을 법적 최대기간(3년)이 아닌 2년으로 제출한 것은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1·2핀테크랩이 동일한 핀테크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 운영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서울시는 동 동의안의 제출 시점까지 핀테크랩의 통합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핀테크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80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은 금융혁신을 이끄는 핀테크 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여의도 서울핀테크랩과 연계하여 글로벌 유니콘 배출을 목표로 핀테크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디지털금융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 나. 제2서울핀테크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효과적인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 나. 위탁기간 : 2년('25.1.~'26.12.)
- 다. 소요예산 : 980,648천원('24년 기준)
- 라.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마. 위탁사무 내용

- (입주기업 관리) 모집·선정 및 평가, 공간 관리, 사용료 징수 등
- (경영안정화 지원) 진단컨설팅, 기술·법률 등 멘토링, 교육 운영
- (시장 진출 지원) BM고도화, 마케팅 지원, 인재채용 등 기획·운영
- (투자유치 지원) IR Deck 제작, IR 밋업 및 데모데이 개최 등
- (규제개선 지원) 혁신기술을 위한 규제 개선 간담회, 컨설팅 등 운영
-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글로벌 진출 컨설팅 등
- (협력사업 추진) 국내·외 핀테크·금융사, VC, 유관기관 협업 추진
- (성과조사) 입주 및 졸업기업 성과조사, 우수 사례 발굴 등
- (시설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의무이행 등

바.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18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핀테크’라는 특화된 산업분야에 대한 육성과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인큐베이팅 시설 운영을 위해 고도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민간의 전문적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18조〉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금 편성(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경제실 금융투자과 이루다 (☎ 2133-5249)